

第33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6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12月24日(金) 10時15分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2. '93年度運營委員會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93年度市民行政委員會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4. '93年度都市建設委員會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2面
2. '93年度運營委員會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運營委員長 提議) 3面
3. '93年度市民行政委員會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市民行政委員長 提議) 5面
4. '93年度都市建設委員會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都市建設委員長 提議) 10面

(10時15分 開議)

○議長 李斗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在籍議員 21명중 出席議員 14名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정기회 제6차 本會議 開議를 선포합니다.

먼저 '94년도 예산 승인에 대한 金東勳 區廳長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東勳 먼저 인사를 드리기 전에 지난 12월 22일자로 인사 발령된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崔熙周 總務局長이 부이사관으로 승진되어서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으로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후임으로 노원구 總務局長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구로 전보된 洪起和 總務局長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劉元鍾 財務局長이 동대문구의 회 事務局長으로 영전 전보되어서 후임 財務局長으로 구로구 市民局長으로 있다가 우리 구 財務局長으로 전임한 李來昶 財務局長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趙轍行 保健所長이 금년 말로 정년 퇴임하기 때문에 후임 保健所長으로 강남구 醫藥課長으로 재직하다가 승진하여서 우리 구 保健所長으로 전임한 李星世 保健所長님을 소개합니다.

尊敬하는 李斗鶴 議長님, 芮相浩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93년도 구의회 정기회가 폐회되는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질의, 행정감사, 예산심의, 각종 자치법규 정비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구축구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도해 주신 議員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93년도 정기회 기간동안 議員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매우 분주하신 시기에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제출한 856억원의 1994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議員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1994년도 예산은 알뜰하게 그리고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집행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검사감독,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주민을 위한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질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추진할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1994년 한 해에도 議員님들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시고 가내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냅니다.

(一同拍手)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鍾路區 金東勳 區廳長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나온 1년 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議員 일동은 본회의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노고와 그 동안의 수고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의회와 구청간의 화합과 협동의 정신을 고양해서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욱 더 구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우리 議員 일동의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업무에 바쁘실텐데 모두 돌아가셔서 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0時21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 委員長!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李炯述 도시건설위원장 李炯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1993년도 정기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질문 그리고 예산결산심의 등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본 위원회에 주어진 안전을 성공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종로구청 관계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3회 정기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은 조례개정(안) 1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1993.3.10

개정된 도로법과 1993.8.1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1993.11.13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하고, 점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도로점용료 부과방법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3. 12. 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3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3년 12월 3일

다. 상정일자: 제33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1993.12.9):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건설국장 임동국)

가. 제안이유

○도로법(법률 제4545호, 1993.3.10개정), 동법시행령(대통령령 13958호, 1993.8.14개정)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3.11.13승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점용료 등의 조정 기한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60일 이내로 함(조례 제25조)

○점용허가 기간 단축시 납부 점용료

반환

○수수료 징수 규정 신설

○세입 구분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윤주철)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5호 도로법이 개정되고 19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액 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세입증대 효과를 기하였고,

○2개년 이상 계속 점용시 전년도에 비하여 10%이상 점용료가 인상되었을 경우 조정산식방법에 의거 30%이내로 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공익사업 즉 전기, 통신,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인 경우 공익성을 감안하여 50%감면토록 하였고, ○도로점용 기간 단축(허가 취소, 사업변경 등)시 기납부한 점용료 중 단축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일치된다고 보이며,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로 점용으로 인한 교통을 원활히 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최대화하였으며,

○점용료 산정시 점용 면적별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은 그 범위가 넓어 인근 토지지가 적용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액제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용형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방법을 탈피하여 지상 점용에 비하여 지하 점용을 하향 구분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 관계 규정과의 형평을 유지하게 되는 등 적법하다고 판단됨.

4. 質疑要旨

(질의자: 김성찬 위원, 천상욱 위원)

○공익성을 감안 50%를 감면하는 것과 공시지가를 적용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 징수하지 않던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94년도 세입예산에 적게 잡은 이유는?

(답변자: 건설관리과장 강성철)

○점용료 조정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꺼번에 5배 이상 부과하게 되면 물의가 있을 것을 감안 10%이상 인상될 경우 10~30%만을 인상 적용하게 하였고, 통신공사나 한전시설물 등은 시민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50%를 감면하는 것임.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한 산출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음.

5. 討論要旨: 없음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해당없음

○議長 李斗鶴 李炯述 委員長! 수고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年度運營委員會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運營委員長 提議)

(10時25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2항 '93年度運營委員會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을 상정합니다.

○運營委員長 李萬魯 運營委員會 委員長 李

萬魯입니다.

運營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 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조례의 제정과 개정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세번째 실시하는 감사였기에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가 진지했음은 물론, 감사 기법도 상당히 성숙되었다고 자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다른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회 내에서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들의 의정 업무 수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감사계획서를 수립,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중요 집행사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 하였습니다. 감사는 '93.12.2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 9명이 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뒤, 질의하고 답변하는 회의제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 내용은 1993년도 예산집행 사항, 의안 처리 현황 및 진정서 접수 처리 실태, 사무국 직원 관리를 비롯한 의정활동 지원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바 불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은 적출되지 않아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은 없었으나, 의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등산대회를 비롯한 체육행사 개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의회 사무국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93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안일 : 1993. 12. 24

제안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1. 제안이유

○운영위원회가 종로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감사기간 : 1993.12.2(1일간)

○감사대상기관 : 종로구의회사무국

○감사실시 경과

—감사반의편성 : 이만로위원 외 8인으로 편성

—감사일정 : 1993. 12. 2.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소회의실

○주요감사실시내용

—1993년도 예산집행 사항

—의안처리현황 및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

—의회사무국직원 관리사항

—기타 의정활동 지원사항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없 음

—건의사항 : 1건

3. 보고서(안) : 별 첨

4.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1993年度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案)

1. 監査의 目的

○종로구의회 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199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국 운영
도모

2. 監査期間: 1993.12.2(1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종로구의회 사무국

4. 監査實施 經過

가. 감사반의 구성

○위 원 장: 이만로

○간 사: 정중구

○감사위원: 현효신, 심재득, 이형술,
홍승태, 나재암, 정창희,
전영태

나. 사무감사 보조직원

○전문위원: 사공 곤, 윤주채

○직 원: 의정계장 정군태
7급 김철안, 8급 장철민,
박정길

○속 기 사: 정은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일시: 1993. 12. 2

○감사장소: 종로구의회 소회의실

라. 감사방법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5. 主要 監査實施內容

○1993년도 예산집행 사항

○의안처리현황 및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

○회의록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 지원사항

6. 監査結果 및 處理意見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없 음

나. 건의사항

○의장기배 쟁탈 등산대회 등 체육행사
개최방안강구

○議長 李斗鶴 李萬魯 委員長! 수고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중절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계시면 토
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중절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보고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
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年度市民行政委員會行政事務監査結果報 告書採擇의件(市民行政委員長 提議)

(10時30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3항 '93年度市民
行政委員會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상정합니다.

市民行政委員會 洪承台 委員長께서 나오서
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洪承台 市民行政委員會 委
員長 洪承台입니다.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
다.

尊敬하는 李斗鶴 議長님과 芮相浩 副議長
님!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와 구
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議員님과 關係公務員님 앞에서 市民行政委員
會 監査 經過 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영
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市民行政委員會의
行政事務監査 結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종로구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과 총무
국, 재무국, 시민국 그리고 종로구 보건소
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과를 보고드리
면, 감사반은 시민행정위원장 및 간사를 비
롯한 위원10인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1993.11.30 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종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
사방법은 주무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업무 내용을 파
악하였으며, 21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겸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위하여 전문성을 고려하여 실, 과별
로 감사 위원을 배정해 면밀하게 감사를
하였으나, 집행기관 역시 매년 자체 사정활
동을 강화함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8건이 감소한
10건이었으며, 건의사항은 1건이 많은 9건이
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
도 600년 기념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자체
감사 실시 현황 및 비위 공무원 적출 처
분 사항, 진정서 처리 현황,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정리 사항, 주요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관계, 각종 산하단체 보조금 지급 현
황,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실적, 구세
부과 징수 실적 및 과년도 체납 구세 정
리 실적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였
습니다.

건의사항 9건과 각 실, 국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1993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안일 : 1993. 12. 24.

제안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제안이유

○시민행정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및 그 하부기관에 대하여 “1993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1993년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감사기간 : 1993.11.30 - 12.2(3일간)

○감사대상기관 :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
국, 종로구보건소, 21개
동사무소

○감사실시 경과

- 감사반의편성 : 홍승태위원 외 9인으로
편성

- 감사일정 : 1993.11.30-3일, 총무국
1993.12. 1-재무국, 시민국
1993.12. 2-동사무소(21개동),
종로구보건소

- 감사장소 : 종로구청 기획상황실

○주요감사실시내용

-대학로운영 및 문화재보수, 관리사항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 계획 및 추
진현황

-감사실시현황 및 비위공무원 적출, 처
분내역

-실, 과, 동별 진정서 접수 처리현황

-지방세 징수 및 체납정리사항

-주요공사 및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사
항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현황

-각종 산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행정소송업무 수행내역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

-불량 한약재 감시현황

-구세부과, 징수실적 및 과년도 체납구
세 정리실적

-종로구 도시가스 공급실적 및 '94년도
공급계획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0건

3 실 소관 : 4건

총무국소관 : 3건

시민국소관 : 2건

재무국소관 : 1건

-건의사항 : 9건

3. 보고서(안) : 별 첨

4.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조 내지 제19조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

1. 監査의 目的

○종로구청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
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1994년도 예산
(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
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 유도

2. 監査期間

1993.11.30 - 12.2(3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민국
- 종로구 보건소
- 각 동사무소(21개동)

4. 監査實施 經過

가. 감사반의 구성

- 위원장: 홍승태
- 간사: 정창희
- 감사위원: 이현구, 정명호, 현수한,
이만로, 정종구, 나재암,
박권선, 김현중

나. 현지확인반 편성

동사무소	확인반편성	비 고	동사무소	확인반편성	비 고
청운동	박권선의원		종로3,4가	정종구의원	
효자동	"		종로5,6가	나재암의원	
사직동	이만로의원		이화동	김현중의원	
삼청동	정창희의원		혜화동	"	
부암동	정명호위원		명륜3가동	정종구의원	
평창동	"		창신1동	홍승태의원	
무악동	현수한의원		창신2동	"	
교남동	"		창신3동	"	
세종로동	이만로의원		승인1동	이현구의원	
가회동	정창희의원		승인2동	"	
종로1,2가	나재암의원				

다. 사무감사 보조직원

- 전문위원: 사공 곤
- 직원: 의사계장 한상은

7급 황주열, 9급 정영호

○속기사: 유연숙, 구상미

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일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993. 11. 30.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종로구청	
1993. 12. 1.	재무국 시민국	종로구청	
1993. 12. 2.	각동사무소 보건소	각동사무소 종로구청	

마. 감사방법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및 현장확인 실시

5. 主要 監査實施內容

소 관 부 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문 화 공 보 실	-문화재 현황 및 보수현황 -일간지 구독료 집행내역 및 구정홍보실적 -공보실의 대 언론기관 지원현황 -정도 600년 기념사업 계획 및 추진사항 -'93년도 종로구지 발행 추진현황	
감 사 실	-감사실시 현황 및 비위공무원 적출내역 -동별 과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구 자체감사 내역 및 시정내용	
시 민 봉 사 실	-실, 과, 동별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 -은행등에서 민원서류 신청, 발급 접수관계	
총 무 국	-종로구청사 유지보수 공사내역 및 예산내역 -동청사 신축, 개축, 확장등 추진계획 -동장, 통장, 반장 임용계획 -방범원 인사처리 내용 -동 행정구역 변경계획 -구 공무원 보직현황 및 부서별 보직변경사항 -동 특별판공비 예산집행내역 -각종 산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동별 적십자 회비 모금현황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현황	
재 무 국	-'93공개경쟁 입찰 실적 -공사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현황 -체납공과금 내역 -구세부과, 징수실적 및 과년도 체납정리실적 -'93 미수납세액중 결손처리사유 및 내역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현황	

소 관 부 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재 무 국	- '93공개경쟁 입찰 실적 - 공사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현황 - 체납공과금 내역 - 구세부과, 징수실적 및 과년도 체납정리실적 - '93 미수납세액중 결손처리 사유 및 내역 -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현황	
시 민 국	- 동별 이웃돕기 성금 모금현황 -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 - 동별 취로노임 지급현황 - 유아교육시설 보조금 지급현황 - 위생업소 인, 허가 및 단속실적 - 모범식당 지정현황 및 기준 - 위생업소 협정요금 단속실적	
종 로 구 보 건 소	- 불량한약판매 단속현황 - 노인정등의 의료지원 현황 - 에이즈 환자 관리 실태 - 관내 약수터 수질관리현황	
현 장 확 인 (각 동)	- 생활보호대책 위원회 운영실태 - 통, 반장 위, 해촉 현황 - 적십자 회비 모금실적 - 이웃돕기성금 모금실적 - 민방위훈련 불참자 조치현황 -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실적 - 공원내 공중변소 관리실태 - 소규모 사업의 실태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	

6. 監査結果 및 處理意見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문화공보실】

○ 각종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로 끝내지

말고 내실있고 많은 시민이 참석,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

【감 사 실】

○ 진정서 건수가 줄도록 사전예방을 위

한 감사제척 수립

- 환경순찰 실적을 건수 위주로 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것.

【시민봉사실】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총 무 국】

- 장기재임중인 통장과 고령 통장을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 요망.
- 화장실이 없는 체육시설에 화장실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것.
- 행정소송 건수를 사전에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여 줄이도록 할 것.

【시 민 국】

- 도시가스 보급을 원하는 주민이 많으니 더욱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것.
- 교통 할아버지들의 방한복이 지급되었으니 캠페인시 통일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재 무 국】

-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누수 및 균열현상이 있는데 동절기 공사를 지양할 것.

나. 건의사항

- 처별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등과 병행하여 상벌을 같이하는 감사실시 요망
- 구민의 소리 전화에 대한 구민들의 반응이 좋으니 더욱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 구상징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애향심을 함양할 것.
- 옥인동 소재 서용택가는 시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든지 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것.
- 행정차량에 대하여 연료절감, 배기가스 감소 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할 용의는.
- 도시가스의 보급을 늘리기 위하여 구 예산으로 정압기를 지원할 방안은.
- 구유재산 중 나대지는 매각하지 말고 타용도(체육공간등)로 활용할 의향은.
- 대부분의 관공사가 재하청으로 인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안은.

- 개별토지가격 재조사 청구 등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할 것.

- 에이즈환자의 정기검진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

○議長 李斗鶴 洪承台 委員長! 수고했습니다.

방금 洪承台 委員長께서 심사 보고한 건에 대해서 質疑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가 보고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年度都市建設委員會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都市建設委員長 提議)

(10時35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4항 '94年度都市建設委員會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을 상정합니다.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 委員長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李炯述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 李炯述입니다.

都市建設委員會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종로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는 도시건설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9인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1993.11.30부터 12.2까지 3일간 우리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중 특별히 12월 1일에 실시한 감사에서는 작년과는 달리 동 행정사무감사를 지양하고, 대신 주요 공사 현장과 공원 조성지역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직접 현장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기해야 할 사항은, 주요 토목공사나, 하수시설 공사의 경우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 외에 장비를 동원, 직접 공사현장을 굴착, 지하 매설물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감사하여 지하구조물 공사도 앞으로는 눈가림식 날림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감사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타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시민행정위원회에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도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반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의 대부분이 투자사업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바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었는지의 여부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 즉, 각종 계약 사항과 도급공사 계약 현황, 국공유지 보통재산의 관리 처분 사항 그리고 불법 및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 주차 단속과 관련된 과태료 징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시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건과 건의사항 5건을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기로 하였는 바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1993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안일 : 1993. 12. 24.

제안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도시건설위원회가 서울특별시종로구청 및 그 하부기관에 대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감사기간 : 1993.11.30~12.2(3일간)
- 감사대상기관 : 도시정비국, 건설국
- 감사실시경과
감사반의편성 : 이형술위원외 8인으로 편성

감사일정 : 1993.11.30~12.2 : 도시정비국, 건설국

감사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주요감사실시내용

- 1993년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사항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주택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조합 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 시민아파트 관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업무 추진사항 및 옥외광고물관리 사항
- 불법 주·정차 단속, 마을버스 운행 등 지역교통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등 건축행정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 지적민원 처리와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 보상업무 추진사항과 가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 주요 도로 및 하수공사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대 조성 및 공원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동사무소 건축관련 민원처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 주요감사 실시 내용

- 현장확인 실시
- 일시 : '93.12.1(10:00 - 16:00)
- 장소 : 별첨 보고서 참조

－확인방법 : 2개반 편성운영

(1반)－반장 : 천상욱 위원

반원 : 심재득 위원,

임와룡 위원,

손광일 위원

(2반)－반장 : 김성찬 위원

반원 : 현효선 위원,

전영태 위원,

박우신 위원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8건

• 도시정비국소관 : 5건

• 건설국소관 : 3건

건의사항 : 5건

3. 보고서(안) : 별 첨

4.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

1. 監査의 目的

○종로구청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199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 유도

2. 監査期間

1993.11.30 ~ 12.2(3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도시정비국

○건설국

4. 監査實施 經過

가. 감사반의 구성

○위원장 : 이형술

○간사 : 천상욱

○감사위원 : 현효선, 심재득, 박우신, 임와룡, 전영태, 손광일, 김성찬

나. 사무감사 보조직원

○전문위원 : 윤주채

○직원 : 의안계장 임성규

7급 양성모, 9급 남승범

○속기사 : 서은미, 정은희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소 관 부 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공 통 사 항	•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 각종계약사항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93년도 공사도급계약 현황 • 국공유지 보통재산의 관리 및 처분 현황 • 각종세외수입 징수결의와 환급 현황 • 각종감사결과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 징계 현황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속직원)	
도 시 정 비 국	• 불법 및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결과 • 시설비목중 무허가건물 철거보상 주거비등 집행내역 • 시민임대아파트 입주 실적 • '92~'93 형질변경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 • '92~'93 옥상광고물허가 및 신고처리현황(무허가현황) • 도시정비과 보상 집행	

소 관 부 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관내도시계획상 미개설사항 88개소 전반에 걸친 내역 및 향후 개설 계획 • '93 관내 운수업체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 • '93 무허가 정비업소현황 및 지도단속현황 • 주차위반 지도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정리 실적('92~'93) • '92~'93 건축허가 현황(준공현황 및 미준공사유) • '91, '92년도 건축공사 완료후 미준공현황 • '91, '92년도 건축공사중 공사중지명령건수 및 사유 • '92~'93 건축허가조건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 '92~'93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감독 관계 • 지적민원 유형별 처리현황	
건 설 국	• 공공용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 노점상 계도비용 집행내용 • 노점상 정비추진 보상금 집행내역 • 지역개발 시설비중 도로보상비 지급내역 및 금액산정, 지급시기, 공사비 산정관계 • 가로정비 실적 • 도로 및 토목공사계획수립 및 집행현황 •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복구 공사현황 • 토목과 하자보수 현황 • 각종감사(감사원, 시감사)지적사항 • 각종공사(공원, 하수, 토목, 도로)내역 대장 • 중앙연수원앞의 3곳 주차장 무료대여 이유 • 100인 이상 진정민원 처리내용 • 동별 소규모사업 관계 • '92~'93 하수도시설 계획수립 및 집행실적 • 하수도사용조례위반자 조치현황 •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현황 •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현황('92~'93)	

소 관 부 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 공원, 녹지 점용료 부과현황('92~'93) • 하자보수 및 보식 현황('92~'93) • 공원녹지시설 임대수입현황('92~'93) • 신영상가 하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6. 監査結果 및 處理意見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시정비국】

- 창신동 595-310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여부
- 창신3동 13(배성여상)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여부
- 송인동 226-234간 골목 노상적치물 3m 이상 점유 돌출간판(풍년삼계탕)으로 차량소통 지장조래
- 동양미용학원 무허가 건물 무단증축 조치여부
- 공공건물과 종교시설중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조치여부

【건설국】

- 인왕산~무악동간 통행로 향나무고사
- 설계내역과 상이하게 시공한 세검정길 빗물받이 공사에 대한 처리결과
- 명륜3가동(성대도로) 하수도관 이음새 마감 미시행 및 하수도관 매설불량

나. 건의사항

- 창신동 595-301 건물이 범죄의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험하니 우선 난간을 보수하고 차폐시설을 해서 사고발생 방지 요망.
-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철거등)를 일관성 있게 할 것.
- 구의원 등에게 공사 감독권을 주어서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원내 매점 임대계약 방법 개선대책 강구
- 노점상 단속 효율화를 위한 대책 강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사항

('93. 12. 1)

[제1반]

○감사위원 : 천상욱의원의외 3인 의원

○감사수행 관계관 : 공원녹지과장 손도근
주택정비계장 한인수

○인 부 : 1인

○장 비 : 삽1개, 곡괭이1개, 차량2대

○감사내용 : 별 첨

[제2반]

○감사위원 : 김성찬의원의외 4인 의원

○감사수행관계관 : 토목과장 손장우,
하수과장 박상돈
공사감독 공무원 5명

○인 부 : 약 10인

○장 비 : 굴착기1대, 삽3개, 곡괭이3개,
차량3대

○감사내용 : 별 첨

(다음 「페이지」에 계속)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제1반)

공사명 (현장명)	감사현장	감사내용	지적사항	비고
○인왕산~무악동간 통행로 공사	무악동	○소공원 조성내용	○향나무 고사목	공원녹지과
○세검정길 빗물받이 시설 공사 및 홍지동 69주 변하수도 공사	신영상가 주변	○빗물받이 시설공사 적정 여부	○시방서 설계 내역과 상이 ※적합공사 20%정도	하수과
○창신동 595-310 무허가 건물	창신2동 595번지 310호	○대지 : 521.1㎡ ○건평 : 456㎡(4층) - 골조공사중 ○건축주 : 박종배	○무허가 축조중 • 4층무허가 건물공정 40% • 골조공사 완료 ※건축주 1년6월 정역형	주택과
○창신3동 13번지(배성여 상)무허가 건물	창신3동 13번지	○무허가 축조여부	○옥상무허가(사진촬영)	주택과
○인왕산~북악산길 정비공 사	북악산	○향나무 식재 : 85주	○양호	공원녹지과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제2반)

공사명 (현장명)	감사현장	감사내용	지적사항	비고
○청계7가~8가간 시범가로 조성공사	청계농협앞 보도	○고압보도 부력 5개굴착 ○잡석 및 모래 피복두께 검사	○피복두께 24cm이상으로 공사양호	토목과
○송인동 226-234간 도로 확장공사	청계농협옆 골목 ~동묘앞로터리	○골목상태 확인	○골목양편 노상적지물3m이상 점유 ○돌출간판(풍년삼계탕)으로 차량소통에 지장 초래	토목과
○창신동 성곽도로 공사	창신동 성곽도로	○포장상태 ○하수시설 ○옹벽공사	○공사양호	토목과
○연진동 298주변외 1개소 하수공사	연진동 284앞	○도로굴착 • 하수도관 이음새 : 양호 • 매설깊이 : 80cm • 포장두께 : 20cm	○공사양호 ※참관주민의견 : 양호 신흥균(연진동 284) 김홍덕(연진동 28-8)	하수과
○명륜3가동(성대도로)	명륜3가 3-2(명륜의원앞)	○도로굴착 • 하수도관 이음새 : 불량 • 피복 : 15cm	○하수도관 이음새 시멘트 마감 미시행 ○하수도관 매설 불량	하수과
○동양미용학원 무허가 건물	왕산로 동양미용학원 (창신2동 578)	○무허가증축 여부 확인	○무허증축(1층)	주택과

○議長 李斗鶴 李炯述 委員長! 수고했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質疑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보고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員 여러분! 지나온 1년 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어언 우리가 3년이라는 의회 생활을 맞이하였습시다라는 특히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을 간단하게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많은 중요한 안전을 처리했으며, 더구나 청원과 탄원, 진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입장에서서 사실로 정성을 다했다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금번 정기회의에 있어서는 하루속히 우리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안전을 처리하여 관계 요로에 반영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하철의 공해 오염도 해소를 위해서 그 건의안을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단시일 내에 그것을 말끔하게 현재 시민이 왕래하는 교통로의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시민의 건강에 만분지 일이라도 기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 의회로서는 참 중요한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립도가 77%밖에 되지 않는 우리 종로구의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합심해서 856억원이라고 하는 신년도 재정을 확보했으며, 그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으로 심도있고 면밀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했다는 이 사실도 참으로 우리가 의정생활을 통해서 참 훌륭한 업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행정 구청 당국에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본議長은 여러분들의 활동 사항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탄복할 정도의 정성을 다했다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지 확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회와 간부 직원들이 새로운 기풍을 가지고 참답게 오로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기틀을 금년도에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議員님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새롭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모두 다같이 보람있는 한 해였다고 간주합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1994년도 정기회가 마무리됩니다라는 항상 변함없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지하시고 사실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욱더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60일 동안의 회기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참 공사간에 바쁘시고 특히나 모두가 사업을 하시는데 추호도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이 해주신 데 대해서 본議長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말을 갈음하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종로구의회 제33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5分 閉會)

○出席議員 15人

李斗鶴	李憲九	玄壽漢
玄孝善	沈載得	李萬魯
李炯述	洪承台	羅在岩
丁昌熙	芮相浩	朴禹信
田永泰	金憲中	金成贊

○關係公務員

區廳長	金東勳
總務局長	洪起和
財務局長	李來昶
市民局長	吳炳漢

都 市 整 備 局 長	尹	泌
建 設 局 長	林	國
保 健 所 長	李	東 星 世